

랜딩을 활용한 홍보시 유의사항

디비카트를 통하여 생성된 랜딩을 자율적으로 홍보하되 아래 사항에 위배되는 홍보지침을 준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 법률 (원문 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>)

제50조의7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
-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
-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광고성 정보게시(홈페이지,카페,블로그,페이스북 등)

1.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2. 인터넷 카페, 채팅사이트 등에서 쪽지를 통해 마케팅을 하 는 경우나,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등에도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, 모든 매체에 예외는 없다.

광고성 정보 전송(문자메시지, 이메일,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여 소문내는 경우)

1. 광고성 정보 전송의 방법으로 홍보를 할 때에는 메 일이나 메시지의 제목에 '(광고)'를 표기해야 한다.
2.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3. 이름과 연락처,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에 의해서만 수집되어야 한다. 마케팅 용도 로 고객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도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. 연락처와 이름이 없이 메일 주소 만 수 집하더라도 고객의 활용 동의가 필요하다.